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8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윤준병・이기헌・정동영

황명선 • 박희승 • 이춘석

안호영 • 박민규 • 조계원

허종식 • 민형배 • 서영교

문대림 · 김윤덕 의원

(1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 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이륜 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 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따른 자동차"를 "따른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소전기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이륜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	1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가
제1호에 <u>따른 자동차</u>	<u></u>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
	를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	2
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	
차, 하이브리드자동차, <u>수소전</u>	수소전
<u>기자동차</u> 또는 「대기환경보	<u>기자동차, 전기이륜자동차</u>
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	
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	
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	자원부장	관이	환경부
장관과 현	별의하여	고시현	한 자동
차를 말한	하다		

가. ~ 다. (생 략) 3. ~ 10. (생 략)

2 (-2 2 2 2 2 4)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